

산학협력단정관

제정 : 2004.03.10
개정 : 2008.12.17
개정 : 2011.04.20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6.03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0.12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02.15
개정 : 2024.03.0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법인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설립하며 대원대학교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·보급·확산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16. 03. 01., 2021. 12. 01>

제2조(명 칭) 이 법인의 명칭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21. 12. 01>

제3조(소재지) 본 협력단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대원대학교 내에 둔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>

제4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
2.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리
3.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취득 및 관리 <개정 2016. 03. 01.>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6.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
7. 교원과 학생 교내 창업 지원 <신설 2014. 11. 01.>
8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 <신설 2014. 11. 01.>
9.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·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<신설 2014. 11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10. 직무발명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<신설 2014. 11. 01.>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서,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 및 부설센터 등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03. 01.>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11.04.20.>
② <삭제 2011.04.20.>
③ <삭제 2011.04.20.>

제6조의2(임원의 임명)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된다. <신설 2011.04.20.>
② 감사는 사무처장이 겸직한다. <개정 2011.04.20., 2014.11.01., 2020.03.01.>
③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.<신설 2011.04.20.>

제6조의3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제6조의2 ③항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[본조신설 2011.04.20.]

제7조 <삭제 2011.04.20.>

제8조(직무대행) 단장이 사고로 인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교 총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감사의 직무) ① <삭제 2011.04.20.>

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시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1.04.20., 2022.10.01.>

③ <삭제 2011.04.20.>

④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1.04.20.>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>

제10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팀을 두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04.20., 2014.07.01., 2020.12.01., 2022.10.01.>

② <삭제 2011.04.20.>

③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1.04.20.>

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소속의 행정인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행정직원의 신분은 대학직원의 신분을 유지 한다. <개정 2011.04.20.>

⑤ <삭제 2014.11.01.>

⑥ <삭제 2014.11.01.>

⑦ 산학협력단에는 창업보육센터 및 보조사업 등의 수탁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센터장 및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. <신설 2020.12.01., 2024.03.01.>

제10조의2(업무분장) 산학협력단의 업무분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04.20.] <개정 2022.10.01.>

제11조 <삭제 2011.04.20.>

제12조 <삭제 2011.04.20.>

제13조 <삭제 2011.04.20.>

제14조(위임전결) 위임 전결에 관한 규정은 대원대학교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8.12.17., 2011.11.22.>

제15조(직원 및 연구원 임용) ①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② 직원 및 연구원의 임명, 보수,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04.20., 2022.10.01.>

③ 단장은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대원대학교의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04.20.> <개정 2011.11.22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6조(명 칭)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고 한다.)라 하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: 2008.12.17., 2011.11.22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제17조(구 성) <삭제: 2023.02.15.>

제18조(기 능) <삭제: 2023.02.15.>

제19조(위원장의 직무) <삭제: 2023.02.15.>

제20조(소집) <삭제: 2023.02.15.>

제21조(회의록 작성) <삭제: 2023.02.15.>

제22조(운영세칙) <삭제: 2023.02.15.>

제 4 장 재산과 회계

제23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, 보조금 등

제24조(재 원) 산학협력단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제25조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: 2023.02.15.>

제25조(수입)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<개정 2021.12.01.>
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<개정 2021.12.01.>
3.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수익금 <개정 2021.12.01.>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 <개정 2021.12.01.>
5. 이자수입 <개정 2021.12.01.>
6. 산학협력단의 연구소 및 기자재·장비의 사용료 <개정 2021.12.01.>
7.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한 수입금 <개정 2021.12.01.>

제26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 <개정 2021.12.01.>
2.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<개정 2021.12.01.>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 <개정 2021.12.01.>
4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5.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의 취득 및 관리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
<개정 2016.03.01., 2021.12.01.>
6. 기술 이전 등 재산권 사업화 촉진에 필요로 하는 경비 <개정 2021.12.01.>
7. 산학협력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<개정 2021.12.01.>
8.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
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제27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
②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 관리한다.

제28조(회계기관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② 단장은 수입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에는 수입 및 지출원을 둔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임명하며 규모에 따라 수입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29조(지출방법) ① 지출은 지출명령에 의하여 제26조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. <개정 2011.04.20., 2021.12.01.>

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, 여비

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0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.

제31조(예산 및 결산) ①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총장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3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>

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보고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0.01.>

1. 재무상태표와 부속명세서 <개정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2. 운영계산서와 부속명세서 <개정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3. 현금흐름표 <개정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4. 부속서류 <개정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
제 5 장 보 상 금

제32조(보상금 지급) ① 법 제25조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04. 20.>

② 제1항에 의한 보상지급기준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. 다만,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 6 장 보 칙

제33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파견되어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재직하고 있었던 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5조(해 산)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6조(잔여재산의 귀속) 산학협력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대원대학교에 귀속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7조(해산 후 조치사항) ① 산학협력단 해산 시 단장이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결과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8조(시행세칙)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9조(공 고)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원대학교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공고한다. 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21. 12. 01.>

1.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2. 산학협력단의 사업내용과 사업과 관련하여 알려야 될 사항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 4 조에 의한 사업 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의 재산권에 대하여서는 산학협력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산학협력단 업무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